

특집 : 헌정사 연구와 비교 헌법(2)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 법제 연구

이현환*

목 차

- I . 들어가는 말
- II . 식민잔재청산의 당위성과 그 규범적 근거
- III . 해방공간에서의 식민잔재청산에 대한 현실과 의지
- IV . 미군정기 식민잔재 청산의 규범화와 그 실현과정
- V . 결론 -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의 실패 요인

[국문요약]

이 연구는 법학의 연구주제로서의 존재(현실)와 당위(규범) 그리고 인간(의지)라는 3원 구조에 기초하여 해방 이후 남한의 미군정기의 식민잔재청산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데올로기의 세기였던 20세기의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겪은 식민지상태와 분단상태의 중간에는 미군정과 소군정이라는 외세의 공간이 있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던 국가성은 일제의 강압적인 합병조약에 의하여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3·1운동을 통하여 새로이 성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최소한 규범적으로는 국가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은 일제의 지배와 그에 부역한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성은 임시정부의 1941년의 건국강령에서 좀더 구체화되어 표명되었다.

해방 이후 식민잔재청산이라는 규범적 당위성은 미군정의 점령과 국내정치세력의 분열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다. 과도입법위원회에 의하여 성립된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 條例」는 미군정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이는 해방공간의 집권세력이었던 미군정(이승만-한민당)의 의지저항이 전체 한국민의 의지저항과 일치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 서원대 법정학부 교수.

결론적으로, 미군정기의 주도세력이었던 미군정과 이승만-한민당 세력은 통일국가에의 의지향이 아닌 분단국가의 의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군정의 의도대로 분단국가로 고착됨으로써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그리고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규범적 당위로서의 자주적 통일 국가의 수립이 좌절되었다. 아울러 남한정부의 당위적 과제이었던 식민잔재청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3원론적 접근, 의지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규범적 지위, 헌정사의 연속성, 식민잔재청산, 건국강령, 미군정의 점령정책, 친일파청산, 신한공사,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I. 들어가는 말

20세기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전반기 반세기를 식민지상태에서 보냈고 후반기 반세기를 분단상태에서 지나왔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적 과제는 분단의 극복을 통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에 있거니와,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전반의 식민지상태와 후반의 분단상태가 가진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한말, 세계사의 주류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상태에서 식민지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가권력의 역사인식과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국가권력 자체의 분열 등의 모습은 그것이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두 가지의 중첩적 과제 - 식민잔재의 청산과 분단의 극복 - 를 완수하지 못하면 또다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세기였던 20세기의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겪은 식민지상태와 분단상태의 중간에는 미군정과 소군정이라는 외세의 공간이 있었고, 이 외세의 공간은 남한정부를 자본주의 국가로, 그리고 북한정부를 공산주의 국가로 성격 지우고 말았다. 통일정부구성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외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남한정부와 북한정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여 민족의 통일성을 해치고 분단국

가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한정부의 경우에는¹⁾ 식민잔재청산의 기회를 상실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는 21세기 들어선 지금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 있다.²⁾

한편, 남한정부 하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식민지역사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는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식민잔재청산의 실패에 이어 연이어 등장한 독재정권은 그들 자신의 친일적 경향으로 인하여 식민청산의 문제에 관하여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87년의 6·10 민주화항쟁 이후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가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특히 친일파청산의 문제는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³⁾

-
- 1) 북한정부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식민잔재의 청산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강정구, 「해방공간 남북한의 친일청산의 실태와 문제점」, 2002.8.13.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논문집, 『한국근현대사 속의 친일의 의미와 친일파청산운동의 필요성』 수록, 40쪽 이하 참조.
 - 2)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큰 사회적 물의를 불렀던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환수소송이나, 2002년의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조상의 친일행적논란, 그리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친일잔재의 청산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조선인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문제, 강제징집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문제, 원폭피해자 보상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4년1월, 친일인명사전편찬을 위한 예산을 국회가 전액삭감한 데에 대하여 전국민적 호응으로 1월8일부터 1월19일까지 단 11일만에 5억이라는 금액을 모금한 것이라든지, 9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재산환수문제, 그리고 일제강점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4.3.2.제정)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당간의 의견대립은 식민잔재청산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문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 3) 친일파청산의 문제는 해방직후에 강하게 대두되었다가, 반민특위의 와해 이후 80년대 후반까지는 산발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 친일문제 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임종국 선생을 필두로 하여 1991년 2월 27일 문을 연 반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잔재청산의 문제를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단체이다 (1995년6월1일 민족문제연구소로 개칭). 동 연구소 및 다른 저자들에 의한 친일파 관련저작들을 살펴보면,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청사, 1982); 『실록 친일파』(돌베개, 1991); 역사문제연구소, 『(인물로 보는) 친일파』(역사비평사, 1993); 김학민·정운현, 『친일파 죄상기』(학민사, 1993); 반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 99인』 제1~3권(돌베개, 1993); 임종국, 『친일, 그 과거와 현재』(아세아문화사, 1994);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제1~

식민시대와 해방공간 그리고 그에 이은 한국전쟁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정치학이나 역사학, 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⁴⁾ 특히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학의 관점에서는 임시정부의 헌법적 지위의 문제, 대한민국의 규범적 연속성의 문제, 헌법제정권력의 완전성 문제, 미군정의 헌법적 지위의 문제, 북한의 헌법적 지위의 문제 등 법규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시대의 헌법학에 대한 완전한 극복이 없이 다시금 일본과 그에 영향을 끼친 독일의 헌법학의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고 번역하는 데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법학 자체가 식민지시대의 잔재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⁵⁾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어야 하지, ‘그 때, 거기서, 그들의’ 문제를 논하는 학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연구성과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한편,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제 영역에서의 기존의 연구성과들은 그 영역들의 특성에 따라 사실관계의 규명과 그 해석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권(청년사, 1994); 친일문제연구모임 편, 『친일변절자 33인』(가람기획, 1995); 『일제잔재 19가지』(가람기획, 1994); 김삼웅, 『친일정치 100년사』(동풍, 1995); 『친일파 100인 100문』(돌베개, 1995);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가람기획, 1995); 친일문제연구회 편, 『일제 침략사 65장면』(가람기획, 1996); 『조선총독 10인』(가람기획, 1996);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파란 무엇인가』(아세아문화사, 1997); 정운현,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학병권유 친일문장 선집』(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세로 밝혀 다시 쓴 친일인 물사』(개마고원, 1999) 등 많은 저작이 있고, 그 외에 문학영역에서 친일문학연구가 적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식민시대의 극복은 단순히 민중들의 삶 속에서의 일제잔재의 청산 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서, 1990년대 이후에 ‘탈식민성 담론’이라 범주화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근 엮음,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지식산업사, 2000) 참조.

4) 근자에 법제사 혹은 법사학 전공자들이 식민시대와 해방 이후의 미군정기의 법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법학의 자주화의 한 단면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5) 해방 이후 미군정은 식민시대의 법학 위에 다시 영미식의 법학을 옮겨놓으려 시도하였다. 김정근, 앞의 책, 101쪽 이하;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교육과학사, 1994) 참조.

따라서 각 영역들의 방법론에 따른 의미부여의 문제는 각 영역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거나,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적 연구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학의 연구주체로서의 존재(현실)와 당위(규범)의 문제는 법학도의 기초적인 인식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거나, 필자는 여기에 인간(의지)이라는 주체를 하나 더 포함시키고자 한다. 존재와 당위에 관한 추상적 논의는 그 자체 법학의 독자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주체이지만, 인간(의지)을 배제한 존재-당위의 논의는 자칫 공허한 담론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인간은 존재의 주체이자 당위의 주체이다. 인간은 존재(현실)의 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 인식의 바탕 위에서 지향해야 할 당위를 도출해낸다. 존재하는 현실과 그를 인식한 인간의 의지가 결합할 때에는 행위로 나아가게 되고 이는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규범이 현실에서 전혀 실행되지 못할 때에는 그 규범은 무의미한 규범이다. 또한 규범이 완벽하게 현실을 규율한다면, 그것은 규범으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관계는 결국 인간의 의지지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현실과 규범을 담지하는 자들이 하나의 통일된 의지지향을 가진다면, 현실과 규범은 일치할 것이지만, 의지지향이 분열되어 통일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현실과 규범도 분열되고 만다. 물론 인간사회의 현상은 의지지향의 불통일성이 더 일반적이어서, ‘지금, 여기서의’ 의지지향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여 왔으며, 민주주의 또한 그 방법의 하나이다.

역사의 흐름에서 일정기간을 잘라내어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서술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적」인 방법이다.⁶⁾ 이 글에서는 해방 후 남한의 미군정기 3년간으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되,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제 영역에서의 기존의 연구성과를 소재로 하여, 존재(현실)-당위(규범)-인간(의지)이라는 세 요소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해석적으로 접근하여, 그에 따라 식민잔재청산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추구하여 보고자 한다.

6) 문승익·김홍명,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자주사상 연구: 1945~1948」,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1981), 339쪽.

II. 식민잔재청산의 당위성과 그 규범적 근거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규범적 지위 — 헌정사의 연속성의 문제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경험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여 당시까지 봉건군주적 증세국가로 남아 있던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면, 굳이 식민지의 경험을 극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1910년에 일본제국에 의하여 합병된 조선은 국가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며, 따라서 해방 이후 식민잔재청산의 문제는 식민지 당시의 폭압적 지배에 대한 저항을 의미할 뿐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공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질 뿐인가?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승인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기구를 갖추지 못하여 정부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명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망명객들의 이합집산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다면, 식민지배의 부당성, 식민잔재청산이나 통일의 문제에 관한 한, 아무런 당위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단절된 역사와 분단된 국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뿐, 규범적 의미에서 한국헌정사의 연속성이나 전통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

해방된 직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정서와 각 정치세력들은 식민잔재의 청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나,⁷⁾ 식민잔재가 왜 청산되어야 하는지에 대

7) 예를 들면, 김대상은, 해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적 영역에 침투되어 있는 일제잔재적 의식을 청산하여 민족의식·민족정신을 순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 모든 부분의 제도와 규범에서 일제적 해독요소를 배제·타파하는” 당면의 과제라고 하고 있고(김대상, 『일제 잔재세력의 정화문제』, 안병직 외, 『변혁시대의 한국사』(동평사, 1979) 수록, 280쪽), 해방 이후 한국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들고 나왔다고 하고 있다(같은 글, 283쪽). 여기서 ‘민족의식·민족정신’, ‘일제적 해독요소’ 등의 표현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일 뿐, 그로부터 직접 식민잔재청산의 규범적 당위성을 도출할 수는 없다.

한 규범적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⁸⁾ 그렇다면 식민잔재청산의 규범적 당위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합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은 1904년 러일전쟁 후 곧바로 한일의정서를, 1905년에 을사늑약을, 1907년에 정미7조약을, 1910년에 8개조의 한일병합조약을 일본제국과 체결하여 국권을 강탈당하였다. 그런데 이들 조약에 대한 국제법 및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조약들이 당시의 국제법의 관행에 의할 때, 모두 무효인 조약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왔다.⁹⁾ 100년 전의 국제조약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 까닭에 매우 논쟁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일련의 조약들이 모두 무효인 조약이라고 한다면, 일용 대한제국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사실상의 감점이 있었고, 또 국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박탈당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통성은 대한제국으로서 계속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강점 이후 헌병경찰제에 의한 무단통치를 자행하던 일본제국에 대하여 강력한 민족적 저항을 표출한 사건이 바로 1919년의 3·1운동이었고 그 직후에 수립된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이었다. 3·1운동이 있기 이전, 합병조약 직후부터 전개된 정부수립운동은 1914년의 신한혁명당의 결성 및 임시정부 수립 실패, 1917년 상해에서의 「대동단결선언」 등으로 이어지다가,¹¹⁾ 3·1운동이라는 거

8)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친일청산의 문제에 관하여 소위 ‘국민정서법’이라는 표현으로 법질서와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견해와 상통된다.

9) 이에 관한 대표적 저술로, 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강점』(까치, 1995);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태학사, 2001) 가 있다. 특히 뒤의 책에서는 이태진 교수와 일본인 국제법학자 및 역사학자 사이의 논쟁이 수록되어 있다. 이태진 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제국이 강화도조약(1876), 제물포조약(1882), 한성조약(1885) 등을 체결할 때에는, 스스로 국제법상의 관행을 철저히 지켜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1904년 이후 합병조약까지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체결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라 무효인 조약이라고 하고 있다. 위의 책 30쪽 이하 참조.

10)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에서조차 대한제국의 종말을 1910년 한일합병조약 체결 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2 대한제국, 355쪽 이하 참조.

11) ‘대동단결선언’은 공회주의에 입각하여 주권불멸론에 의한 국민주권을 제창하고 대한제국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상속하기 위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8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107쪽 참조.

즉적 독립운동이 있는 후 노령정부(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 및 상해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¹²⁾ 3·1운동은 비록 강압적인 일제의 무단통치에 저항하는 형태로 표출되기는 했지만, 고사직전에 있던 군주국 대한제국의 국가성을 국민주권에 의한 공화제정부로 바꾸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³⁾ 그러한 의미에서 3·1운동은 국가를 형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치적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뜻은 1919년 4월 11일에 제정된 임시헌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은 「... 漢城에 起義한 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이라고 하여 임시정부의 성립근거가 국민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⁴⁾

임시정부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망명정부라는 설,¹⁵⁾ 망명정부도 아

12) 대한국민의회는 3월 21일에, 상해임시정부는 4월 13일에, 그리고 한성정부는 4월 23일에 성립되었다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13) 같은 뜻으로, 신용하, 「3·1운동의 재평가」, 안병직 외, 『변혁시대의 한국사』(동평사, 1979) 수록, 186쪽 참조. 다만, 신용하 교수는 '10년간 단절되었던 민족정권'이 새로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그러하다는 것이고 규범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국가성이 3·1운동이라는 거족적 운동을 통하여 공화제인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교체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김영수 교수는 영토의 병합으로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가로서의 계속성이 중단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제국 사이의 법적 계속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김영수, 『한국헌법사』(학문사, 2000), 237~38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병합조약이 무효라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이의 법적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1919년4월11일의 임시헌장 제8조는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선(대한제국)을 부정하고 탄생한 정부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혁명적 한계상황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선(대한제국)을 승계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14) 이 선언문은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상해에서 만든 임시정부가 한성(서울)에서 기의한 3·1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1운동 후 30여일에 만든 대조선공화국(세칭 한성정부)을 상해에서 다시 조직한다는 것이다. 한성정부를 추진하던 이봉수 등이 한성정부의 각료명단을 가지고 상해에 간 것은 3월말 4월초의 일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05쪽 이하;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념」, 국가보훈처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상)』 수록논문(1999), 668~9쪽 참조.

15) 한태연, 「한국헌법사 서설」, 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헌법사(상)』(1988), 40쪽. 한 교수는 망명정부를 식민지 망명정부와 패전국가의 망명정부로 구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전자에 속한다고 한다.

니고 신생국가도 아닌 특수유형이라는 설,¹⁶⁾ 정식정부의 준비정부라는 설¹⁷⁾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주국인 대한제국의 국가성을 공화국으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망명정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규범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제의 강점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강점기 조선에서의 친일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의 강점행위가 부당하고 또 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가 반국가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으로 임시정부의 국가성 및 규범성이 승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극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조차도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한일병합으로 인하여 조선 내지 대한제국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해방 후의 식민잔재청산의 문제와 분단의 문제는 신생국가의 문제로 이해되고 말 것이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식민잔재청산의지—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존재 그 자체로 일제강점에 대한 저항과 독립국가에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강압적 조약에 의하여 강탈된 대한제국은 3·1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계승되었고, 임시정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⁸⁾ 1919년 성립 이후 1945년까지 27년간 중국 각지(상해—항주—가흥—남경—장사—광주—유주—중경)를 떠돌면서도 1930년대에는 임시정부의 주도 하에 강력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의열투쟁은 일제 타도와 민족독립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일제기관 파괴, 일제 요인암살, 친일파

16) 김영수, 앞의 책(2000), 238~39쪽.

17) 조동걸, 앞의 글(1999), 669쪽 참조. 조동걸 교수는 '임시정부는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이므로, 준비의 타당성이 민족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하고, '3·1운동의 주권의 지에 근거를 두고 발생했다'고 하여 정식정부의 준비정부로 보고 있다.

18)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는 너무도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교육도서출판사, 198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2002) 등.

및 밀정·부일배의 처단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¹⁹⁾ 이들의 거사는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소기의 목표달성의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열투쟁의 행위양식을 단지 형태론적으로만 고찰하여 ‘테러리즘’으로 규정짓고 격하시킨다면, 이는 잘못이며, 의열투쟁은 전적으로 민족사적·세계사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40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독립전쟁의 호기로 삼기 위하여 정부를 전시체제로 개편하여 내부 정비를 단행하는 한편, 장래 광복 후에 건설할 민족국가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급선무이었던 것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세력을 집결시키는 것이었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지도이념과 체계적인 행동강령이 요구되었다. 그 결실로 나타난 것이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제정·공포된 「대한민국건국강령」이었다. 이 강령은 3·1운동으로 집약된 민족주의·자유주의를 새롭게 정립한 삼균주의를²¹⁾ 기본이념으로 하여 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 확립한 것이었다.²²⁾ 형식적으로 볼 때,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헌법은 아니었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헌법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는 것이었다.²³⁾

건국강령은 총 3장24항으로, 제1장 총강 7개항, 제2장 복국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⁴⁾ 이 중에서 건국 후의 식민지재청산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3장 건국 편의 제4항 (B)과 제6항 (L)에서 표명되어 있다. 제4항

19)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48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352쪽.

20) 위의 책, 354쪽.

21) 주지하다시피, 삼균주의는 조소앙의 핵심정치사상으로, 個人·民族·國家 사이의 균등, 정치(均權)·경제(均富)·교육(均學) 사이의 균등이 실현된 세계일가의 이상사회를 復國·建國·治國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2) 1931년에 임시정부는 건국원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을 천명하였는데, 이것이 삼균주의 제1차선언이었고, 이를 계승하여 건국강령이 공포되었다.

23) 김영수, 앞의 책(2000), 217쪽도 같은 뜻.

24) 건국강령에 대한 분석은, 황묘희,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사』(경인문화사, 2002)가 상세하다. 또한 조동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국가보훈처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상)』 수록논문(1999)도 참조.

(B)은 식민시대의 인적 청산에 관한 사항으로, 「敵에 附和한 者와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建國綱領을 反對한 者와 精神의 缺如된 者와 犯罪判決을 받은 者는 選舉 及 被選舉의 權이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제6항 (L)은 식민시대의 물적 청산을 규정한 사항으로, 「敵의 侵占 或 施設한 官, 公, 私有土地와 漁, 鑛, 農, 林, 銀行 會社 工場 鐵道 學校 教會 寺刹 病院 公園 等 房産과 基地와 其他 經濟 政治 軍事 文化 教育 宗教 衛生에 關한 一切 私有資本과 附敵者의 一切 所有資本 及 不動産을 沒收하여 國有로 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건국강령은 좌우익을 망라한 제 정치단체의 공통된 정치이념이었으며, 공포 후 각종 선언문을 통해 동의되고 채택되었다.²⁵⁾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세력을 집결시키는 중심이념으로 되었고,²⁶⁾ 이후 제5차 개헌 후의 임시헌장과 제헌헌법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²⁷⁾ 그러나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의 헌법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토 내에서 실효적 지배력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광복 후 신국가 건설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었다.²⁸⁾ 그리고 인적 청산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건국강령의 규범성을 전면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식민잔재청산이라는 문제에 한정하여 보면, 건국강령은 임시정부헌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제지배에 대한 저항과 건국 후의 식민잔재청산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지배와 그 지배 하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5) 황묘희, 위의 책, 75~76쪽 참조.

26) 건국강령 공포 후, 이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즉, 의회정치를 추구하는 건국강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건국강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의견이 없었고, 별다른 변동없이 유지되었다. 위의 책, 93쪽 참조.

27) 김영수, 앞의 책(2000), 311, 352쪽; 조동걸, 앞의 글(1999), 726~27쪽 참조. 건국강령과 제헌헌법의 관계는 별도로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주제로 생각된다.

28) 황묘희, 앞의 책, 104쪽.

3. 소결

일제에 의한 식민지 상태는 표면적으로는 191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대한제국의 국권은 조금씩 잠식되었다. 일본제국은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체결한 여러 조약에 근거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시작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한제국의 규범적 정당성이 부인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제국은 3·1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그 정통성이 이전되었고, 이 임시정부의 헌법은 일제의 지배와 그에 부역한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방 이후 식민잔재청산의 당위성을 제시해주는 규범적 근거로 되는 것이었다.

해방되기까지 27년간의 임시정부의 존속기간 중에서 임시정부는 1941년에 건국강령을 발표함으로써 임시정부의 규범성을 좀더 구체화하여 표명하였다. 삼균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여 만들어진 건국강령은 광복 이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원칙들을 정하였고, 특히 식민잔재의 인적·물적 청산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가치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Ⅲ. 해방공간에서의 식민잔재청산에 대한 현실과 의지

1. 해방과²⁹⁾ 그 의미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크게는 2차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전으로부터 작

29) 이흥구 교수는 해방과 광복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해방은 과거 및 전통과 결별하여 일제 침략 이전에 존재하였던 정치조직이나 사회조직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정치 및 사회체제를 만들어낼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보고, 광복은 대체로 민족적 전통과 민족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주로 우익에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흥구, 「정치이념의 혼란과 전개」, 서울대학교신문사 편, 『광복 30년: 시련과 극복의 역정』 수록(서울대학교출판부, 1977), 22~23쪽.

게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일해방투쟁으로부터 귀결하였다.³⁰⁾ 가혹한 일제식민지 통치 하에서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던 우리 국민은 해방이라는 가슴벅찬 현실을 맞아 식민잔재 청산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2차대전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열강 간의 전쟁,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전쟁, 제국주의 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³¹⁾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로 범세계적으로 구식민지체제가 붕괴되고, 식민지가 독립국이 되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이 성립되었다. 전후 재편된 자본주의 체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이전의 체제와는 달랐다. 첫째, 미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로 등장하였고, 둘째, 미국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경제·군사·정치적인 부담을 떠맡았으며, 셋째,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세계 체제 내에 다수의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였다. 넷째, 민족주의적인 반중심부 혁명운동이 주변부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갔다.³²⁾ 전후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 유동상태에 있었다. 소련을 필두로 하는 좌익세력은 동유럽을 사회주의체제로 편입시켰고, 이에 위협을 느낀 자본주의 열강,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식민상태로부터 벗어난 신생국들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 즉 사회주의권과의 동맹에 의한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길과, 제국주의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길이 제시되었던 것이다.³³⁾ 이러한 세계체제

30) 8·15해방이 진정한 해방인가 하는 해방의 의미의 평가와 해방의 주체에 관해서는 상이한 입장이 있다. 해방의 의미에 대하여 전통주의적 관점에서는 8·15해방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론을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수정주의적 관점에서는 8·15해방을 완전한 해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방의 주체와 동인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미소 연합군에 의한 일제 타도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외인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해방의 직접적 원인이 연합국의 승리였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복합요인론이 대두되었다. 안진, 『미군정기억압기구 연구』(새길, 1996), 48쪽, 주 2) 참조.

31) 위의 책, 같은 쪽 본문.

32) 정일준, 「해방직후 분단국가형성과정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연구회 편,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문학과학지성사, 1988) 수록논문, 102쪽.

의 재편의 과정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과정에도 투영되어 좌우의 사이의 운동세력의 분열을 가져왔다.³⁴⁾ 좌우의 사이의 분열은 해방공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식민잔재청산과 독립국가건설의 과제는 이러한 틀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2. 미군정의 점령정책

해방직후 민족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의 제 정치세력들은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세력(김구), 한민당세력(이승만), 조선공산당세력(박헌영), 중간세력(여운형) 등이었다. 이들이 건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미군이 진주하였다. 미군정은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포고문 1, 2호와 그 후의 일련의 군정법령을 통하여, 주한미군사령부는 「1) 통치권의 담당자로서 남한 내의 유일한 정부이다 2) 미 본국정부의 한 대리자로서 군사점령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3) 남한의 사실상 정부로서 자치정부의 일반 기능을 담당한다 4) 귀속재산의 소유자로서, 관리자로서, 장차 한국정부의 피신탁자로서 활동한다」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³⁵⁾ 미군정의 이러한 입장은 미군정의 법률고문이었던 Ernst Fraenkel의 견해에 따른 것이었다. 즉, Fraenkel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제법의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은 ‘국민이 없는 땅’이며 ‘정부가 없는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한국은 경제적·법적 진공상태의 존재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³⁶⁾ 그리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조선이 그들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분리되었다는

33) 위의 논문, 104쪽.

34) 19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과 1930년대 정당통일운동 그리고 1940년대 초의 민족통일운동 등 임시정부 27년간 내내 좌우의 사이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는 곧 반일저항운동과 신국가건설에 관한 노선과 방법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근거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대립이 깔려 있었다. 각 시기의 통합운동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하)』의 제9부 참조.

35) Ernst Fraenkel, *Structure of United States of Army Military Government*(22 May 1948), pp.9~10; 번역문은, 梶村秀樹 지음, 김동춘 엮음, 『한국현대사연구1』(이성과학실사, 1988), 99쪽.

36)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한울아카데미, 2001), 139쪽 참조.

것은 곧 망국 이전의 국가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국가창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은 자신의 혁명적 활동에 의해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운명은 해방자의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국제법적 해석이었다.³⁷⁾

식민지상태에서 벗어난 한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미군당국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피식민국가를 해방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단지 승전국으로서 점령군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국민족의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국가건설을 위한 최종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후의 국가건설을 그들의 구상대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독립국가건설의 주권적 의지가 한국민에 있지 아니하고 미군정에 있다는 사실은 점령군으로서의 미국 내지 미군정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전혀 한국민의 동의나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미군정 자체도 배척하여야 할 외세에 다름아닌 것이었다.

3. 국내정치세력의 분열

해방 후의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대하여 국내의 정치세력들은 독립국가건설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현실적 정치세력으로서의 미군정과의 관계설정에 고심하였다.³⁸⁾

먼저,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가 20여 일 만에 해체당한 여운형 중심의 조선인민당은 그 강령에서 통일전선에 의한 인민정권의 수립, 한국 내 일본인 재산 및 민족반역자의 재산몰수와 국유화, 토지 분배 등을 내세

37) 위의 책, 147쪽 참조. 이러한 기본시각은 임시정부와 인민공화국 모두에 대한 부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38) 이하의 내용은,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문학과 지성사, 1988), 116~181쪽 및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편, 『한국현대사 I - 해방직후의 변혁운동과 미군정』(풀빛, 1994), 63~95쪽 그리고 안진, 앞의 책(1996), 67~96쪽 등의 서술을 재구성하였음.

우고, 통일독립국가수립을 위하여 좌익 뿐만 아니라 우익세력과도 연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좌우합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인민당은 변혁의 동력으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인텔리 층 뿐만 아니라 양심적 자본가, 지주까지도 민족통일전선형성에 포함시키는 진술적 유연성을 보였지만, 냉전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극우, 극좌 양노선의 방해로 전선형성에 실패하였다.

다음으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세력은 한민당-이승만계의 구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세력과 대립되는 극좌세력으로서 혁명지향의 급진적 이념을 기본노선으로 하였다. 건국을 위한 통일전선형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처음부터 헤게모니 장악에 지나치게 집착하였고, 통일전선의 기본원칙으로서 친일파·민족반역자를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건준이나 임시정부와 같았으나, 민족 부르조아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그 폭이 제한되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후 그 세력들을 흡수하려 하였으나, 임시정부의 거절로 실패하였다. 모스크바3상회담 후 신탁통치안이 알려지자 처음의 반대입장을 바꾸어 찬성입장을 공표하였다.

다음으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은 초기에는 송진우 계열의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지주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주, 자본가, 그리고 군정청관료(일부 친일관료)들로 식민지 시대의 지배계급이었다는 점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 한국민주당은 해방 후의 제정당 가운데 친일파 처벌을 주장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었는데, 이는 친일파 처리와 토지개혁 등 주된 변혁의 대상이 바로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임시정부를 봉대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임시정부가 친일파처리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그 후광을 얻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승만은 귀국 후 자신만의 독자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공이나 한민당을 모두 거부하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결국 한민당계의 지지만을 얻을 수 있었다. 한민당과 이승만은 모스크바3상회담 후 신탁통치안이 전해진 6개월 후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좌우익의 정당들로부터 분단의 영구화를 획책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다음으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은 미군정의 방해로 인하여 개인자격으로 귀국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그 상징적 지도력으로 인하여 당시의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제후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한민당과는 친일파처리에서의 의견차이와 철저한 민족자주노선을 이유로 하여 제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신탁통치안이 제기된 후 한민당 세력과 함께 반대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신탁통치안 발표 후 즉시 임정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반탁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접수하기 위한 전국민의 행동강령(國字 1호 및 2호)을 공표하기도 하였다. 임정주도의 반탁운동은 모스크바 3상회담의 협정 전문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반전되었고, 김구와 하지의 회담 이후 임시정부는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임정을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미군정을 권력실세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좌익을 배제한 채 임정 주도 하에 자주적 과도정부수립을 목표로 한 비상국민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구성된 최고정무위원회는 미군정에 의해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으로 개편되어 군정의 자문기구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군정이 한국문제의 UN이관과 단정수립을 공표하자, 임정세력들은 통일국가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의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요컨대 임시정부 세력은 철저한 민족자주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통일운동에 실패하였다. 그것은 미군정이 임정세력의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꺼려 국가형성과정에서 배제하였으며, 임정 세력 스스로도 미군정 주도의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소결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지배의 폭압에서 벗어난 해방공간에서는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국이라는 정치세력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닌 국내의 정치세력들은 그들 각각의 의지지향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미군정은 세계 자본주의의 수호자로서 한국을 단지 반공의 보루로 만드는 것 이상의 아무런 기대

도 갖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혁명적 상황의 진정과 안정적 현상의 유지를 점령정책의 기초로 삼았으며, 남한 내의 국내 정치세력들의 갈등과 정치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³⁹⁾

이러한 미국의 점령정책에 대응하여 국내의 정치세력들도 복잡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식민잔재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친일파청산의 문제는 임시정부의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과 좌익세력에게는 필수적인 과업이었지만, 미군정 및 한민당 세력에게는 전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정치세력으로 이승만-한민당 세력이 국가형성의 주도세력으로 선택되었다. 이 이승만-한민당 세력은 식민잔재청산 및 친일파의 처리에 가장 소극적이었고, 이후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남한단독정부는 식민잔재청산의 문제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식민잔재청산과 독립국가건설이라는 당위적 과제에 대하여 해방공간에서의 현실의 정치세력들은 통일적인 의지사항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전혀 다른 의지사항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정과 한민당 세력이 결합함으로써 식민잔재청산의 계기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소한 미군정기에는 임시정부의 국가성 내지 규범성이 부정되는 결과로 되었다.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국가성 내지 규범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군정 자체도 반민족적 외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미군정기 식민잔재 청산의 규범화와 그 실현과정

1. 미군정기의 법체계

해방공간 3년을 주도적으로 규정하는 권력으로서의 미군정은 식민권력을 대체하여 그 자체로 법적 권위로 작용하였다. 식민시대의 폭압적 지배의 주역을

39) 안진, 앞의 책(1996), 61쪽.

담당한 식민지 시대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친일관료집단을 그대로 유입시켰으며,⁴⁰⁾ 일제법령에 관해서도 거의 그대로 잔존시킴으로써,⁴¹⁾ 식민지 시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점령지역 남한을 지배하기 위한 각종의 규범형식은 태평양 미육군총사령부 포고, 남조선 과도정부법률, 군정청 법령, 행정명령, 군정청 부령 및 각종 지령, 군정이 폐기하지 않은 총독부 법령, 한국의 전통관습법 등이 있었다.⁴²⁾ 태평양 미육군총사령부 포고는 미군진주 직전(1945년 9월 7일)에 발한 것으로 진주 후에는 거의 발해지지 않았으며,⁴³⁾ 국내정치에 대한 미군정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에⁴⁴⁾ 성립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규범형식인 남조선 과도정부법률은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군정청법령에 대한 보조적 입법기능을 가질 뿐이었다. 이는 과도입법의원 개원 후 입법된 법령이 12건에 그치고 그나마 군정장관의 인준을 거쳐 입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개원 동안 입법위원의 심의없이 군정장관이 직접 발한 법령이 총 65건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알 수 있다.⁴⁵⁾

40)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 포고 제1호 제2조. 미군 진주 후 미군정은 행정관료기구와 경찰, 국방경비대, 사법체제 등을 재편하였으나, 일제식민지 통치기구를 더욱 중앙집권화된 형태로 재편하였고, 그 기구들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구 식민지 관료들과 한민당계 극우세력으로 충원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미군정의 지휘 하에 미국의 점령정책을 이행하는 국가기구로 기능하였다. 위의 책, 122~23쪽 참조.

41) 미군정법령 제11호 및 제21호. 제11호에서는,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적으로 폐지하였고(제1조), 기타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법령 중 그 사법적,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케 하는 것은 이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였다(제2조). 그렇지만 민사법 분야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법률 이외의 법률들(특히 조선형사령에 의한 일본 의용형사법들)은 그대로 존치되었다.

42) 김영수, 앞의 책(2000), 365쪽 이하 참조.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 포고는 제4호까지 발령되었고, 남조선과도정부 법률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설립(1946년 12월 12일, 1948년 5월 20일 해산) 후 그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제정한 법률로서 총 12건이며, 미군정청 법령은 총 219건이었다.

43) 제4호는 1946년 7월 1일에 발해졌는데, 이는 제3호(통화)의 수정이었다.

44) 미군정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이승만을 적극 지원하여 1946년 5월 경에는 이승만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와 결탁한 한민당은 미군정에 행정고문제도를 건의하여 10월 이후 행정, 입법, 사법의 전 영역에 걸쳐 깊숙이 개입하였다. 과도입법의원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설립되었다.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 편, 『한국현대사 I - 해방직후의 변혁운동과 미군정』(풀빛, 1994), 64~76쪽 참조.

45) 미군정기의 주요법령의 내용과 성격에 관해서는, 김영수, 앞의 책(2000), 380~395쪽 참조.

결론적으로 미군정은 군정청법령을 실질적인 통치수단으로 하여 그들의 점령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제한된 권능만을 가질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해방된 대한민국의 당위적 과제는 미군정청의 점령목적에 의해 크게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2.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의 법제도

해방을 맞이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식민잔재의 청산의 문제는 인적 청산과 물적 청산의 두 분야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과제이었다.⁴⁶⁾ 인적 청산은 일본인 및 식민지 지배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 소위 친일파들에 대한 청산의 문제이고, 물적 청산은 식민통치의 지배구조와 그를 뒷받침한 물적 토대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⁴⁷⁾ 친일파와의 인적 동맹을 통하여 인적 청산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식민지통치구조를 온존시킴으로써 지배구조의 청산을 어렵게 하였다. 다만 물적 청산의 일부분으로서 일본 또는 일본인 및 그들이 소유 하였던 적산을 처리하는 것은 전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한 업무이었다. 적산처리의 문제는 신한공사(New Korea Company, NKC)를 설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때의 기본적인 법구조는 일본 또는 일본인 소유의 재산권을 먼저 군정청이 취득하도록 하고 있었다. 남한 내의 유일한 정부가 군정이라는 인식 하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신한공사를 통하여 조사된 토지 등의 재산은 중앙토지행정처를 통하여 소작인들에게 매각되었다.⁴⁸⁾

46) 강정구 교수는 식민잔재의 청산이 구조청산과 인적 청산의 두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강정구, 「해방공간 남북한의 친일청산 실태와 문제점」,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한국근현대사 속의 친일의 의미와 친일파청산운동의 필요성』(2002.8.13) 수록논문, 28쪽 참조.

47) 미군정은 적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군정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본인을 잔류시키려 하였으나 한국인의 거센 반발로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

48)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의 활동과 경과에 대해서는, 신복룡, 앞의 책(2001), 199~212쪽 참조. 근자에, 미군정 당시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토지를 귀속당한 자들 중에서,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들의 토지까지 귀속당하였다 하여 이의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식민통치의 물적 토대 중의 하나이었던 토지문제에 관한 또하나의 문제는 토지개혁문제이었다. 북한의 토지개혁((1946년 3월)에 자극받은 남한사회는 토지개혁에 관한 요구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미군정 당국도 이의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토지개혁문제에 임하였다. 그러나 호남토지개혁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한민당의 우익노선을 외면할 수 없었던 군정으로서는 농민의 저항보다는 지주의 저항이 더 버거웠고, 토지개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농민들의 저항도 적지 않았던 까닭에,⁴⁹⁾ 결국 정부수립 이후로 미뤄지고 말았다.

한편, 식민잔재에 대한 인적 청산의 과제는 미군정의 현상유지정책에 의하여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제시기에 관리를 지낸 자들이 모두 처벌되어야 하는 친일파·민족반역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친일파·민족반역자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인적 청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해방공간에서 현실적인 해계모니의 장악을 위한 정치적 투쟁의 과정에서 인적 청산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승만과 한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라도, 친일파 청산을 필수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⁵⁰⁾ 미군정에 의하여 정국의 주도권이 확립된 이후 한민당의 건의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설치를 공포하자,⁵¹⁾ 1946년 10월 7일 중도좌우세력이 참여한 좌우합작위원회는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심리·결정하여 실시하게 한다는 등의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군정사령관에게 건의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한 입법의원은 개원 직후부터 의원자격문제에서 친일파문제가 제기되었다.⁵²⁾ 친일파처리문제는 정부수립 후로 미루자는 군정청의

49) 위의 책, 214쪽. 토지개혁에 대한 당시의 남한 정치세력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신기현, 「미군정기 정당·사회단체의 토지개혁인식」, 한국사회사연구회, 앞의 책(1988), 279쪽 이하 참조

50) 해방공간에서의 각 정치세력들의 친일파처리에 관한 인식과 대응에 관해서는, 허 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청산 그 좌절의 역사』(도서출판 선인, 2003), 52~78쪽 참조

51) 군정법령 제118호(1946.8.24.).

52) 과도입법의원의 선거에서는 친일파로 지목되던 자들이 대거 당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의 중도 좌우세력은 친일파가 배제된 의원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입법기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가진 입법의원을 지향하였으며, 이의 실현여부는 향후 자신들의 정치적 진로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허 중, 앞의 책, 95쪽.

입장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민족반역자처리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법기초위원회가 설치·구성되었고(1947.1.9.), 1947년 3월 13일 제30차 회의에 초안이 상정되었다. 초안은⁵³⁾ 수정안, 재수정안으로 변경되면서 약 4개월간의 격론을 거친 후에 1947년 7월 2일 최종 통과되었다.⁵⁴⁾

3. 특별조례의 내용과 평가

(1) 특별조례의 내용

최종 통과된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 條例」(이하 ‘특별조례’라 함)는 총 5장 12개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⁵⁾

제1장 民族反逆者

제1조 일본 또는 기타 외국과 通謀하거나 迎合協調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禍害를 끼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로서 左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를 民族反逆者로 함.

- (一)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 (二) 일본정부로부터 爵을 受한 자
- (三)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 (四) 公私施設을 파괴하거나 多衆暴動으로 살인·방화 또는 이를 선동하여 지주독립을 방해한 자

53) 특별조례 초안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草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원문은 『(영인본)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2)』(선인문화사, 1999) (이하 『과도입법의원속기록』으로 약칭함), 350쪽 이하 수록. 초안은 총5장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1장은 부일협력자에 관한 법률, 제2장은 민족반역자에 관한 법령, 제3장은 전범에 관한 법률, 제4장은 간상배에 관한 법률, 제5장은 시행법령으로 구성되었다.

54) 특별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허 중, 앞의 책, 92~111쪽 참조.

55) 전문은 위의 책, 108~110쪽에서 재인용.

- (五)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 (六)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살상·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 제2조 전조의 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附日協力者

제3조 일정시대에 일본세력에 아부하여 악질행위로 동포에게 해를 가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함.

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一) 襲爵한 자
- (二)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되었던 자
- (三) 책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 (四)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 (五)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 간부되었던 자
- (六)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 (七)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나.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罪迹이 현저한 자

- (一) 府·道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 (二) 책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또는 軍·警部に 判任官 이상 내지 고등계에 임직하였던 자
- (三) 日本國策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 되었던 자

제4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3장 奸商輩

제5조 1945년(4278년)8월15일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며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간상배로 함.

- (一)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謾利한 자
- (二)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謾利한 자
- (三) 배급물자로 부정하게 謾利한 자
- (四) 밀항으로 부정하게 폭리한 자

제6조 전조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謾利금액의 倍額 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4장 가감형

제7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거나 또는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8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단함.

제5장 형법수속

제9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제10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 법령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함. 단 제1조 제4항의 죄는 此限에 不在함.

부칙

제11조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는 이를 일체 금지함.

제1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2) 평가

먼저, 특별조례를 전체로서 살펴보면, 동 특별조례는 각 적용대상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처벌대상이 되는 각 행위들이 모두 조례 제정 이전에 행해진 행위들이므로 일종의 형사소급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형사법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으나, 해방이라는 혁명적 상황 하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입법(ad hoc legislation)이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형사법으로서의 성격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특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다른 특징적인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두도록 한 점이다. 조사위원회위원과 판사 및 검사를 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경찰, 사법 그리고 행정의 영역이 모두 식민시대의 관리들로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이들에 의해 친일파처리가 왜곡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⁶⁾

특별조례는 제1조 4항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의 시한으로 3년의 공소시효를 두었는데, 이 규정 또한 초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가 수정 및 재수정을 거치면서 삽입된 것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처벌에 공소시효를 둔다는 것 자체가 처벌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 수정 및 재수정의 과정에서 친일행위자로 의심을 받는 입법의원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개별적인 규정으로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 등의 각 규정들은 초안의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범위가 축소되었고 그 처벌도 약화되었다. 이것은

56) 위의 책, 102쪽.

초안의 내용이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었고, 그 처벌도 너무 가혹하여 민족반역자의 처벌보다는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수정 및 재수정을 거쳐 대폭 축소된 것이었다. 특히 수정 및 재수정 과정에서 친일행위자로 의심받는 자들이 참여하여 규정을 축소함으로써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특별조례가 초안에 비해 범주가 축소되고 처벌규정도 약화된 채 제정된 것은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처리를 반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특히 민선의원들은 초기에 특별법기초위원회에 참여를 기피하는 등 친일파처벌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법안이 구체화되자 법안마련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약화를 주도하였다. 또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던 친일파들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개최와 신문광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특별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특별조례 제정을 주도한 중도 좌우세력이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민선의원들이 중심이 된 극우세력들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⁵⁷⁾

4. 특별조례의 집행과 미군정의 입장

비록 최초의 초안보다는 많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특별조례는 식민잔재에 대한 인적 청산을 위한 법률로서 제정되었고, 이어서 특별법기초위원회는 특별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세칙인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 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 구성 및 소송법」을 상정하였는데, 조사위원회는 9인으로 하고, 특별재판관은 10인, 특별검찰관은 9인으로 구성하며, 단심제로 하되, 죄목에 따라 단독재판, 3인 합의부재판, 재판관전원의 연합부재판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법은 입법위원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미군정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57) 위의 책, 111쪽.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이 성립된 후, 입법의원선거법에 더 관심이 있었을 뿐 친일파처리의 문제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조례 초안이 기초되고 선거법의 제정이 지연되자 특별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하지 자신이 과도입법의원에 참석하여, 친일파처리라는 조선인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자신은 누가 친일파인지 알 수 없다고 하여 친일파처리의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7월 2일에 특별조례가 통과되자, 친일경찰을 비롯한 친일파의 인준거부요구가 더욱 거세졌으며, 미군정은 조례통과 후 근 5개월만인 11월 27일에 인준보류를 입법의원에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입법의원의 의원들은 미군정에 대하여 격렬히 비난하면서 과도입법의원의 즉시해체를 주장하고 인준보류에 대한 질의서를 헬믹 대장에게 전달하였다. 미군정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친일파로 지목되던 인물들을 군정에 기용하여 민중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친일파처리문제는 충성거실시라는 상황에 매몰되어 더 이상 부각되지 못한 채 미군정하에서의 친일파처리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⁵⁸⁾

5. 소결

미군정은 군정청법령을 실질적인 통치수단으로 하여 그들의 점령목적 달성과고자 하였으며, 반관선, 반민선으로 구성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제한된 권능만을 가질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해방된 대한민국의 당위적 과제는 미군정청의 점령목적에 의해 크게 왜곡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식민잔재청산을 위한 두 가지 과제 즉, 인적 청산과 물적 청산의 과제 중에서 물적 청산의

58) 위의 책, 112~116쪽 참조. 그러나 특별조례 자체는 해방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친일파청산의 문제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었다. 해방 이후 각 정치세력들이 친일파청산을 주장했었지만, 명확한 기준과 처벌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비해 특별조례는 한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친일파와 반민족행위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처벌절차, 처벌규정 등을 갖춘 완결적인 법률이었다. 이후 정부수립 후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측면에서는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를 통하여 일본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리하였지만, 토지개혁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수립 후의 과제로 남겨졌다. 다른 과제인 인적 청산의 문제는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 條例」의 제정으로 귀결되었으나, 미군정의 반대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제한적, 보조적 성격으로 인하여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었으며, 해방공간에서 집권세력이었던 미군정(이승만-한민당)의 의지사항과 전체 한국민의 의지사항의 차이로부터 나타난 당연한 귀결이었다.

V. 결론-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의 실패 요인

이데올로기의 세기였던 20세기의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겪은 식민지상태와 분단상태의 중간에는 미군정과 소군정이라는 외세의 공간이 있었다. 남북한은 공히 통일국가를 주체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채, 외세에 의하여 규정되어 버렸고, 특히 남한의 경우에는 식민잔재 청산의 기회마저도 상실하고 말았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던 국가성은 일제의 강압적인 합병조약에 의하여 사실상 상실되었으나, 3·1운동을 통하여 새로이 성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최소한 규범적으로는 국가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은 일제의 지배와 그에 부역한 자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성은 임시정부의 1941년의 건국강령에서 좀더 구체화되어 표명되었다. 삼균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여 만들어진 건국강령은 광복 이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원칙들을 정하였고, 특히 식민잔재의 인적·물적 청산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가치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해방 이후 식민잔재청산이라는 규범적 당위성은 미군정의 점령과 국내정치세력의 분열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말았다. 즉, 식민잔재청산과 독립국가건설이라는 당위적 과제에 대하여 해방공간에서의 현실의 정치세력들은 통일적인 의

지지향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전혀 다른 의지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정과 한민당 세력이 결합함으로써 식민잔재청산의 계기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최소한 미군정기에는 임시정부의 국가성 내지 규범성이 부정되는 결과로 되었다.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국가성 내지 규범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군정 자체도 반민족적 외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도입법의원에 의하여 성립된 「民族反逆者 附日協力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 條例」도 또한 미군정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며, 이는 해방공간의 집권세력이었던 미군정(이승만-한민당)의 의지지향이 전체 한국민의 의지지향과 일치하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군정기의 주도세력이었던 미군정과 이승만-한민당 세력은 통일국가에의 의지지향이 아닌 (미필적일지라도) 분단국가의 의지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현실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미군정의 의도대로 분단국가로 고착됨으로써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그리고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규범적 당위로서의 자주적 통일국가의 수립이 좌절되고 말았다. 아울러 남한정부의 당위적 과제이었던 식민잔재청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100년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식민과 분단이라는 중첩적인 고통과 질곡을 안겨 주었지만, 이 고통과 질곡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초반은 망해가는 나라의 현실에서 결국 식민상태로 귀결되었고, 미군정기를 거쳐, 20세기의 딱 절반인 1950년의 한국전쟁을 최악의 저점으로 하여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으며, 20세기의 후반은 비록 분단상황이기는 하지만,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가 시작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과거의 질곡을 털어버리고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루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주체적 평가 그리고 그에 따라 설정되는 우리의 당위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의지지향과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liquid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remnants in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Lee, Heon Hwan*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al system for the liquid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remnants in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which was established for three years after the korean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imperial colony.

I made the study in view of the tripartite analysis of the normative study - Sein(is ; reality), Sollen(must, ought to ; norm) and Wille(will).

In the 20th century, Korea has two bitter experiences of the japanese colony(the first half of the century) and the division of the nation(the latter half of the century). Between them, there were two military governments - the U.S. Military Government(in South Korea) and the U.S.S.R. Military Government(in North Korea).

After th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colony, Korea had to liquidate the colonial remnants. In North Korea, Kim Il-Sung and the U.S.S.R. Military Government had succeeded in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mnants according to the socialistic ideology, but in South Korea, domestic political groups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failed to liquidate the colonial remnants.

The normative Sollen of the liquidation of colonial remnants in South Korea,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legitimac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frustrated

* Professor, Seowon University.

by the reality of the military occupation and the split of a political pow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objected, according to the occupation policy, to promulgate the legislation for the liquidation of colonial remnants by the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and domestic political groups had made an efforts only for grasping the political pow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s the initiative power of the emancipated (south) korea and the korean political leader Rhee Syngman and the Korean Democratic Party had the will-orientation of the divided nation, not of the unified nation, and consequently an important problem of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mnants was frustrated.

[Key Words] the tripartite analysis of the normative study, will-orientatio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japanese colonial remnants, japanese imperialism, liquidation of the colonial remnants, the legislation for the liquidation of colonial remnants, the Interim Legislative Assembly.